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보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0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
신달호 의원, 양은숙 의원

1. 제안이유

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. 이에 수수료 산정 시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방지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물가인상률과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산정 반영 근거 신설(안 제7조제3항)
- 나.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 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에서” 를 “「하수도법」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·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 법 제2조” 를 “뜻은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” 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” 를 “(책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” 를 “법 제3조제2항에 따라” 로, “관할 구역안” 을 “관할구역” 으로, “할 책무를 진다” 를 “한다” 로 한다.

제4조 중 “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” 로, “안내통지” 를 “통지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” 를 “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” 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” 을 “법 제45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

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,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라” 로,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3.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” 를 “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” 로, “지역은” 을 “지역을” 로, “의무 제외지역” 을 “의무제외 지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른 의무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” 를 “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” 를 “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대행 분뇨처리 수수료)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징수할 수 있는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업무를 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군수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행 위탁한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이 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

집·운반수수료와 함께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다.” 를 “을 따른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당해시설” 을 “해당시설” 로, “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” 를 “있다” 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시행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·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뜻은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-----.</p>
<p>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의 설치·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</p>	<p>제3조(책무) ----- -----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관할구역----- ----- 한다.</p>
<p>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)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</p>	<p>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) ---- -----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----</p>

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)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.

제5조(분뇨수집·운반의 대행)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2. (생략)
3. 수집·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
4. 5. (생략)

----- 통지-----
-----.

제5조(분뇨수집·운반의 대행)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

----- 법 제45조-----
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각 호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
4. 5. (현행과 같음)

6. 기타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.

제6조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)

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·운반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다만,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으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.

1. 2. (생략)

제7조(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)

①군수는 법 제41조제

6.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-----

③ ---- 제1항에 따라 -----
----- 범위에서 -----
-----.

제6조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)

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-----
-- 지역을 ----- 의무제외 지역-----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)

① ---- 법 제41조제4항에

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[별표 1]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·징수한다.

<신 설>

제8조(분뇨처리 수수료)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 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따라 분뇨-----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-----

-----.

③ 군수는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대행 분뇨처리 수수료) 법 제41 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징수할 수 있는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업무를 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군수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행 위탁한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이 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와 함께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)

①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보고, 검사) 군수는 분뇨

수집·운반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,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)

①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을 따른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<삭 제>

제11조(보고, 검사) -----

----- 해당시설

-----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

필요한 -----
-----.

□ 「하수도법(법률)」(2023.8.8. 타법개정, 2024.5.17. 시행)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5조(분뇨수집·운반업) ① 분뇨를 수집(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)·운반하는 영업(이하 “분뇨수집·운반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□ 「하수도법 시행령(대통령령)」(2024.11.5. 타법개정시행)

제29조(분뇨수집·운반업)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,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,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,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·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 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■ 하수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2. 12. 6.>

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기준 (제29조제1항 관련)

시설 및 장비	기술인력
가. 사무실(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 소재)	수질환경산업기사, 위생사,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
나.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(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,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,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)	
다. 주차공간(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)	
라. 복합가스(산소,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)측정기 1대 이상	